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9. 2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1년 8월 22일

나. 발 의 자 : 이재형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 2011년 9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16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1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이재형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에서 “월 12,000원 이하”로 하고, 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를 확대 신설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의 부과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적정한 의료보장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월 1만원 이하”에서 지원하던 것을 “월 12,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도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타 자치구 보험료 지원사례를 보면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5천원 이하인 구는 강남구, 월 1만 2천원 이하인 구가 종로, 구로, 동작, 서대문구이며 그 밖에 구에서는 1만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1년도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월 평균 90세대로 확대지원 시 150세대가 늘어난 약 24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예산액은 약 3,210천원이 증액된 13,2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경우 질병발생 위험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부과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혜자를 늘리는 것은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
----------	----

발의연월일 : 2011년 8월 22일

발 의 자 : 이재형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에서 “월 12,000원 이하”로 하고, 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를 확대 신설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있음(2012년도 예산반영)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월 1만원 이하”를 “월 12,000원 이하”로 하고 동조에 제3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p> <p>1. ~ 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3조 (지원대상) -----</p> <p>-----</p> <p>— 월 12,000원 이하인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국가유공자 세대</u></p> <p>4. 「<u>한부모가족지원법</u>」에 따른 <u>한부모가족 (모자, 부자) 세대</u></p> <p>5. <u>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u></p>